
제22차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위원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Korea Healthy Cities Partnership

- 목 차 -

■	회 의 개 요	
	▶ 회의 개요	2
	▶ 2015년 협의회 주요 성과	4
■	주 요 안 건	
	▶ 2016년 주요 사업 계획(안)	9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13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24
	▶ 기타 안건	30
■	참 고 자 료	
	▶ 협의회 정관	32
	▶ 협의회 회원 현황	45

회의 개요

| 회 의 개 요 |

- 일 시 : 2016. 2. 5.(금) 10:30
- 장 소 : 회원도시별 지정소
- 참석대상 : 운영위원회 실무자 (정회원 11개 도시, 준회원 2개 기관)
- 주요안건
 - 2015년 협의회 주요 성과
 - 2016년 협의회 주요 사업 계획(안)
 - 2015회계연도 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
 - 2016회계연도 협의회 세입·세출 예산(안)
 - 기타안건 : 2015년 연회비 미납도시

□ 회의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09:30~10:30	[사전준비] 화상회의실 입장완료 및 테스트	도 시 별
10:30~10:35	■ 회의진행 안내 및 참석자 소개	사 회 자
10:35~10:40	■ 개회 및 인사말씀	의 장
10:40~11:10	■ 주요안건 심의 및 발전 방안 논의	의 장
11:10~11:20	■ 공동정책 연구용역 관련 브리핑	고광욱 교수 (연구 용역 책임 교수)
11:20~	■ 폐회	

2015년 협의회 주요성과

2015년 협의회 주요성과

① 협의회 총회 개최 : 2회

- 제15차 임시총회 : 2015. 4. 6. / 서울시 영등포구 글래드 호텔
 - 2014년 주요사업 성과 보고, 2015년 주요사업 계획(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협의회 정관변경 등
- 제9회 정기총회 : 2015. 9. 17. / 경기도 시흥시 ABC 행복학습타운
 -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 제10회 KHCP 정기총회 개최지 선출(울산광역시), 회원도시 단체장 우수사례 발표, Healthy City Toolkit 소프트 런칭 등

②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2회

- 제20차 운영위원회 회의 : 2015. 4. 6 / 서울시 영등포구 글래드 호텔
- 제21차 운영위원회 회의 : 2015. 8. 12 / 도시별 화상회의 지정소

③ 실무자협의회 개최 : 2회

- 제1차 실무자협의회 회의 : 2015. 7. 17. / 대전시 유성구 계룡스파텔
- 제2차 실무자협의회 회의 : 2015. 12. 4. / 충남 아산시 온양호텔

④ 학술위원회 회의 개최 : 3회

- 제9차 학술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 2015. 5. 14. / 서울시 강동구 보건소
- 제10차 학술위원회 회의 : 2015. 7. 21. / 서울시 중구 서울역 근처
- 제11차 학술위원회 회의 : 2015. 9. 18. / 경기도 시흥시 ABC 행복학습타운

⑤ 건강도시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특강 개최

- 일 시 : 2015. 4. 6. 임시총회 시
- 장 소 : 서울시 영등포구
- 참석인원 : 220여 명
- 주요내용
 - 건강수준향상을 위한 사회적 노력 / 김미경 상명대학교수
 - 모든 정책 건강관리 매뉴얼 / 고광욱 고신대학교수

⑥ Urban HEART 2.0 Training 워크숍 개최

- 일 자 : 2015. 9. 16.
- 장 소 : 경기도 시흥시 ABC 행복학습타운
- 참석대상 : 회원도시 관계자
- 주요내용 : Urban HEART 소개 및 국외 활용 사례, 그룹 실습 등
 - ※ Urban HEART : Urban Health Equity Assessment and Response Tool (도시 건강 형평성 평가 및 대응 도구)의 약자로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이 건강 불평등을 파악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계획하는 가이드

⑦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공동정책 발굴 및 추진

[KHCP 공동정책 발굴]

- 기 간 : 2015. 3. ~ 8.
- 참여대상 : 회원도시 단체장, 담당자 및 학계
- 주요내용
 - 공동정책 및 공동사업 발굴을 위한 기본 배경 및 사업분야 분석
 - 공동정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1, 2차 설문조사
 - 공동정책 선언문 작성 및 학술위원회 자문

[KHCP 공동정책 및 의제 선언식 개최]

- 일 시 : 2015. 9. 17. 정기총회 시
 - 참석대상 : 회원도시 단체장, 담당자 및 학계
 - 주요내용 : KHCP 공동정책으로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 선포
- [KHCP 공동정책 연구용역 착수]
- 기 간 : 2015. 10. ~ 2016. 1.
 - 연 구 진 : 고광욱 고신대 교수(책임연구원), 이명순 성균관대 교수, 김건엽 경북대 교수, 김은정 계명대 교수 등 9명
 - 주요내용 : 협의회 공동정책 추진 방안 마련,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 관련 국외 사례 연구, 국내형 가이드 라인 제안
 - 향후계획 : 현 연구용역 기반으로 2차 연구용역 실시, 공동정책 어워드 신설 (9월 정기총회 시 발표 및 시상)

㉚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WHO 협력센터 MOU 체결

- 일 자 : 2015. 11. 23.
- 장 소 : 강동구청장 집무실
- 기 관 : KHCP ⇔ WHO Collaborating Centre for Healthy Cities and Health in All Policies
- 참 석 : 협의회 의장, 박윤형 센터장
- 주요내용 : 협약서 서명 및 간담회

㉛ 한국건강증진개발원-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공동주최 ‘건강도시 워크숍’ 개최

- 일 자 : 2015. 11. 30.
-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양재동 The-K Hotel
- 참 석 : 28개 회원도시 실무자 등 관계자 53명

- 주요내용
 - WPRO Healthy Cities Toolkit 소개(고광욱 고신대 교수)
 - 건강도시,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운영방안
(이명순 성균관대 교수)
 - 건강도시 교재의 개발 및 활용(장원기 순천향대 교수) 등

9] 협의회 소식지 「Healthy City 뉴스레터」 제작 배포

- 제작시기 : 분기 1회
- 제공방법 : 공문 배포 및 협의회 홈페이지 등재
- 배포실적 : 4회
- 수록내용 : 건강 정책 동향, 회원도시 활동 소개, 해외 사례 등

10] 기타활동

- 신규 회원 가입 인증 : 9개 도시
 - 경기도 고양시, 전남 광양시, 충남 아산시, 충남 논산시, 울산광역시, 대구시 수성구, 서울시 강북구, 경기도 오산시, 전북 남원시
- 협의회 유공자 포상
 - 선발기준 : 협의회 가입년도 및 건강도시 업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포상종류 : 공로패, 표창패(부상 : 상품권 20만원)
 - 수여시기 : 제9회 정기총회 시
 - 수 여 자 : 7명

11] 유관기관 및 회원도시 지원 업무

- 회원도시 행사 참석 및 벤치마킹 지원 협조
- WHO WPRO(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회의 참석 및 의견 개진 등
- AFHC(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메일 영문 번역 지원 및 배포
- 신규 회원도시 선포식 시 축하 화환 전달 및 서한문 발송 등

2016년 주요 사업 계획(안)

| 2016년 주요 사업 계획(안) |

① 협의회 회의 개최 및 운영

- 운영위원회 회의 : 2회 (2016. 2월 · 7월)
- 실무협의회 회의 : 3회 (2016. 2월 · 7월 · 12월)
- 임시총회 : 1회 (2016. 4월)
- 정기총회 : 1회 (2016. 9월 / 울산광역시)
- 학술위원회 회의 : 2회 (2016. 4월 · 9월)

② 제6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의장도시 선거

- 의장 희망도시 공모 : 2016. 3월 중
- 신청대상 : 81개 정회원 도시 (창원시, 원주시 제외)
※ 의장도시 임기 : 2017년 ~ 2018년 [2년]
- 심사 및 추천 : 2016. 7월 운영위원회 회의 시
- 투표 및 결과발표 : 2016. 9월 정기총회 회의 시
※ 의장도시 선출 시, 감사도시 2개 투표 및 선출

③ 2017년 제11회 정기총회 개최지 선정

- 신청공고 : 2016. 6월 중
- 신청대상 : 81개 정회원 도시
- 후보등록 심의 : 2016. 7월 운영위원회 회의 시
- 투표 및 결과발표 : 2016. 9월 정기총회 회의 시

④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 건강포럼 개최

- 일 자 : 2016. 4월 임시총회 시
- 참석대상 : 회원도시 관계자 150여명
- 주요내용 : 건강도시 미래상 및 발전방향 모색

⑤ 건강도시 정책리더십 아카데미 개최

- 일 자 : 2016. 2. 14.(일) ~ 2. 18.(수)
- 장 소 : 필리핀 마닐라, 일본 나고야
- 참석대상 : 회원도시 단체장
- 주요내용
 - WHO WPRO 기관 방문 등 국외 건강도시 협력체계 구축
 - 건강도시 및 건강증진 관련 정책 및 국제 동향 공유
- 소요예산 : 20,000천원

⑥ KHCP 공동정책 어워드 및 지속적인 연구 수행

- 추진목적 :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 우수 도시 평가 및 시상을 통한 건강도시 활성화 및 회원도시 사기 진작과 공동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용역 추진
- 추진방법

구 분	어 워 드	연구용역
기간	2016. 3. ~ 8.	2016. 3. ~ 8.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워드 가이드라인 제시 ▶ 참여 희망도시 공모 및 심사·평가 ▶ 제10회 정기총회 시, 어워드 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정책 중장기전략 수립 ▶ 회원도시 공동정책 사업 사례 분석 ▶ 공동정책 평가지표 및 환류 방안 도출
예산	2,500천원(시상금)	20,000천원

⑦ 건강도시 실무자 국외연수 개최

- 일 자 : 2015. 5월 중
- 장 소 : 국외 건강도시 (일본 등)
- 참석대상 : 희망 회원도시 담당자
- 주요내용 : 국외 건강도시 사례 공유 및 벤치마킹 등
- 소요예산 : 15,000천원

⑧ 2016년 제7차 AFHC 국제컨퍼런스 참가

- 기 간 : 2016. 8. 29. ~ 8. 31. [2박 3일] ※ 공식일정
- 개최지 : 강원도 원주시
- 참석대상 : AFHC 회원도시 및 참석 희망 도시
- 주요내용 : 총회 및 건강도시 컨퍼런스, 어워드
- 등록비 : 참가자 1인당 150천원
- 소요예산
 - 개최지 지원금 : 10,000천원
 - 참가도시별 지원금 : 500천원

⑨ 절주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도시 테마 네트워크 결성

- 기 간 : 연중
- 추진내용 : 절주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별 사업 교류, 홍보 등
- 추진방법 : 참여 희망 도시 모집 후 연대 사업 개발·홍보

⑩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협업 프로그램 운영

- WHO Collaborating Centre for Healthy Cities and HiAP
 - 기관소개 : 건강도시 및 범정책건강 WHO 협력센터 (순천향大)
 - 협업내용 : 회원도시 역량 강화 교육·훈련 사업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기관소개 : 건강정책 개발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기타 공공기관
 - 협업내용 : 신체활동사업 등 사업 공유 및 워크숍
- WHO WPRO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 기관소개 : 서태평양지역 회원국의 건강 증진 및 보건 현안 총괄
 - 협업내용 : 국제 보건 현안 공유 및 컨퍼런스 개최 등 교류 확대
- 소요예산 : 5,000천원 (운영비 및 급식비 등 분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I. 세입·세출 총괄개요

(단위: 천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잔액
금액	247,768	246,095	130,140	115,955

II. 세입결산

(단위: 천원)

과목 \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합계	247,768	250,095	246,095	△4,000	
회비수입	168,000	168,000	164,000	△4,000	
과년도수입	79,768	79,768	79,768	0	
이자수입	0	487	487	0	
워크숍등록비	0	1,840	1,840	0	

III. 세출결산

(단위: 천원)

과목 \ 구분	예산현액	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합계	247,768	246,095	124,140	6,000	115,955	
경상예산	24,000	24,000	24,000		0	
사업예산	141,970	141,970	99,637	6,000	36,333	연구용역비 이월
예비비	81,798	80,125	503		79,622	인건비 지출

결 산 검 사 의 건 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회장 귀하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관 제12조 및 제13조 3항에 따라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로서 2015회계연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 검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집행율 및 목별 집행내역이 모두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개선 권고사항으로 정기 총회 개최도시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조건에 부합된 보조금 정산검사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서는 세입·세출 결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결산검사

제주특별자치도 이 남 형 (서명)
강원도 속초시 이 북 옥 (서명)

I. 결 산 내 용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47,768천원이며, 총 수입액 246,095천원 중 지출액은 130,140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15,95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 세입결산

가. 세입결산총괄

- 2015회계연도 수납액은 246,095천원로서 2개 도시 연회비 4,000천원 미납되었으며, 수납액의 내역으로는 회비수입 164,000천원, 과년도수입 79,768천원, 이자수입 487천원, 워크숍 참가자 등록비가 1,840천원입니다.

재원별 세입 결산 총괄표

(단위: 천원)

과목 \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 고
합 계	247,768	250,095	246,095	△4,000	
회비수입	168,000	168,000	164,000	△4,000	
과년도수입	79,768	79,768	79,768	0	
이자수입	0	487	487	0	
워크숍등록비	0	1,840	1,840	0	

나. 과년도 수입

-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집행 잔액분 79,768,58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 이자수입 등

- 이자수입은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여유자금 50,000천원을 금융상품에 6개월간 예탁하여 344천원의 정기예금 이자가 발생하였으며, 보통예금 이자는 139천원의 수입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라. 워크숍 등록비 수입

- 건강도시 워크숍 참가 희망도시의 등록비로 1,840천원을 수납하여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 세출결산

가. 세출결산총괄

- 2015회계연도 결정액은 246,095천원으로 지출액 124,140천원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6,000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15,955천원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과목 \ 구분	예산현액	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247,768	246,095	124,140	6,000	115,955	
경상예산	24,000	24,000	24,000		0	
사업예산	141,970	141,970	99,637	6,000	36,333	
예 비 비	81,798	80,125	503		79,622	인건비 지출

과목별 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천원)

과목 \ 구분	예산현액	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247,768	246,095	124,140	6,000	115,955	
인건비	24,000	24,000	24,000		0	
사무관리비	26,650	26,650	20,420		6,230	
공공운영비	3,620	3,620	3,592		28	
운영수당	9,000	9,000	4,600		4,400	
행사운영비	18,300	18,300	11,887		6,413	
국내여비	6,000	6,000	2,083		3,917	
국외여비	2,000	2,000	90		1,910	
업무추진비	3,000	3,000	2,999		1	
연구개발비	30,000	30,000	14,000	6,000	10,000	
행사실비보상금	13,100	13,100	9,837		3,263	
행사지원비	30,000	30,000	30,000		0	
자산취득비	300	300	129		171	
예비비	81,798	80,125	503		79,622	인건비 지출
결산 후 수입	0	0	0		0	

나. 목별 집행내역

- 인건비는 협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 기관 부담분의 의무적 경비로서 정상 집행되었습니다.
- 사무관리비는 협의회 공동정책 홍보물 제작비, 신규도시 인증패 및 상장케이스 제작 등 사무용품비와 각종 회의자료·회원도시 기념품·신규 회원도시 축하 화환구입비 등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 공공운영비는 우편료, 협의회 홈페이지 도메인 수수료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사무국 복합기 및 화상회의 사용료 등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 운영수당은 학술위원회 회의(5. 18일 / 7. 21일 / 9. 17일) 참석수당 4,400천원 및 운영위원회 회의(8. 12일) 준회원 참석수당으로 20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행사운영비는 임시총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대관료, 현수막 제작비, 건강도시 역량강화 워크숍 숙박비·식대 등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 국내여비는 협의회 주최 회의 및 회원도시 행사 참석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 업무추진비는 AFHC 사무국장 방문 간담회, WHO WPRO 관계자 간담회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 행사실비보상금은 임시총회(4.6일), 운영위원회 회의(4.6일) 및 실무자협의회(7.17일, 12.4일) 참석자에게 급식비 제공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 행사지원비는 제9회 정기총회 행사를 지원하는 경비로 개최 도시인 경기도 시흥시에 30,00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예비비 80,125천원 중 503천원이 인건비 부족분으로 집행되었습니다.

3. 재산결산

2015회계년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재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결산 총괄표

(단위: 천원)

물품분류	품 명	수 량	취득원가	비 고
업무용	노트북 PC	1	1,710	2009년 취득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1	299	2013년 취득
업무용	녹음기	1	129	2015년 취득

4. 금고결산

2015회계도 대한민국의건강도시협의회 금고를 검사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고 결산 총괄표

(단위: 천원)

구 분	총수입	총지출	잔 액	비 고
협의회 금고	246,095	124,140	121,955	이월액: 6,000천원

※ 예금잔액증명서 참조

Ⅱ. 개선 및 권고사항

□ 정기총회 행사 지원비(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 절차 마련

가. 2015년도 정기총회 지원비 현황 : 개최지에 30,000천원 지급

나. 개선권고 사항

- 개선 권고사항으로 정기총회 개최도시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조건에 부합된 보조금 정산검사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감사 현장



[붙임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관리번호 : 0011072696

2015- 0400830

발행일 : 2016 년 01 월 21 일(13:37:07)

대한민국죽건강도시협의회 귀하

예금(신탁)종류	계좌번호	잔액(원)	미결제타점권(원)	관련대출, 질권(천원)
보통예금	932-01-006351	₩121,955,221	₩0	0
합계		₩121,955,221	₩0	0

20 15 년 12 월 31 일 현재 고객님의 명의의 예금(신탁·환매채) 잔액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농협은행

서울영업부



- 주) 1. 이 증명서는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 2. 예(탁)금잔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는 영업점장의 확인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 3. 잔액증명서 발급기준일에는 해당 예금계좌의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본 잔액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행 홈페이지(<http://banking.nonghyup.com/>) 초기화면의 "빠른조회서비스" 에서 진위확인이 가능합니다.

1/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 2016회계연도 세입 예산(안) |

□ 세입총괄

(단위 : 천원)

항 목 별	예 산 액	비 고
합 계	283,955	
○ 회비수입	168,000	
○ 과년도수입(전년도 이월)	115,955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항목별(산출기초)	예 산 액	비 고
합 계	283,955	
협의회 수입	283,955	
회비수입	168,000	
○ 광역자치단체 회원도시 3,000,000원 × 6개 = 18,000,000	18,000	
○ 기초자치단체 회원도시 2,000,000원 × 75개 = 150,000,000	150,000	
과년도 수입(이월) = 115,955,221	115,955	

| 2016회계연도 세출 예산(안) |

□ 세출총괄

(단위 : 천원)

항 목 별	예 산 액	비 고
합 계	283,955	
○ 인건비	28,000	
○ 일반운영비	82,420	
○ 여비	9,000	
○ 업무추진비	3,000	
○ 연구용역비	20,000	
○ 일반보상금	43,400	
○ 자치단체등 자본이전(행사보조금)	40,000	
○ 자산취득비	3,000	
○ 예비비	55,135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항목별(산출기초)	예 산 액	비 고
합 계	283,955	
101. 인건비	28,000	
○ 사무국 직원 보수(4대 보험료 및 퇴직금 포함) 28,000,000원×1명 = 28,000,000	28,000	
201. 일반운영비	82,420	
사무관리비	22,400	
○ 협의회 사무국 사무용품비 1,000,000	1,000	
○ 공로패·표창패 제작 100,000원×20개 = 2,000,000	2,000	
○ 회의자료 제작 5,000원×200부×3회 = 3,000,000	3,000	
○ 신규 회원도시 축하 화환 구입 100,000원×5개 = 500,000	500	

항목별(산출기초)	예산액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레터 원고료 및 제작비 400,000원×4회 = 1,600,000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HCP 공동정책 어워드 시상금 2,500,000원×1식 = 2,500,000 	2,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HCP 기념품 구입 5,000,000 	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HCP 홍보물 제작 3,000,000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통역비 및 번역비 1,000,000원×2회 = 2,000,000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기 임대료 및 소모품 구입 150,000원×12회 = 1,800,000 	1,800	
운영수당	7,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00,000원×15명×2회 = 6,000,000 	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준회원) 200,000원×2명×3회 = 1,200,000 	1,200	
공공운영비	3,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물 발송 1,000,000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상회의 이용료 등 20,000원×15명×3회 = 900,000 	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호스팅 임대료 60,000원×12월 = 720,000 	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유지보수 700,000원×1식 = 700,000 	700	
행사운영비	49,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총회 및 창립10주년 건강포럼 운영지원 2,500,000원×1회 = 2,500,000 	2,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지원 800,000원×2회 = 1,600,000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협의회 회의 운영지원 800,000원×3회 = 2,400,000 	2,400	

항목별(산출기초)		예산액	비고
	○ 건강도시 정책리더십 아카데미 운영지원 20,000,000원×1회 = 20,000,000	20,000	
	○ 건강도시 실무자 국외연수 운영지원 15,000,000원×1회 = 15,000,000	15,000	
	○ 제7차 AFHC 국제 컨퍼런스 참가단 회의 개최 3,000,000원×1회 = 3,000,000	3,000	
	○ 건강도시 네트워크 협업 프로그램 운영 5,000,000	5,000	
202. 여비		9,000	
	국내여비	6,000	
	○ 사무국 직원 관내여비 100,000원×1명×12월 = 1,200,000	1,200	
	○ 사무국 직원 관외여비 200,000원×2명×12월 = 4,800,000	4,800	
	국외여비	3,000	
	○ 사무국 국외여비 3,000,000원×1명×1회 = 3,000,000	3,000	
203. 업무추진비		3,000	
	○ KHCP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3,000,000	3,000	
207. 연구개발비		20,000	
	연구용역비	20,000	
	○ KHCP 공동정책 20,000,000	20,000	
301. 일반보상금		43,400	
	행사실비보상금	43,400	
	○ 임시총회 참가자 급식비 40,000원×200명×1회 = 8,000,000	8,000	
	○ 운영위원회 회의 참가자 급식비 30,000원×30명×2회 = 1,800,000	1,800	
	○ 실무협의회 회의 참가자 급식비 30,000원×30명×3회 = 2,700,000	2,700	
	○ 학술위원회 회의 참가자 급식비 30,000원×15명×2회 = 900,000	900	
	○ 제7차 AFHC 국제 컨퍼런스 참가 지원 500,000원×60개 회원도시 = 30,000,000	30,000	

항목별(산출기초)		예산액	비고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행사보조비)		40,000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행사지원비)	40,000	
	○ 제9회 KHCP 정기총회 개최 지원금 30,000,000원×1식 = 30,000,000	30,000	
	○ 제7차 AFHC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원금 10,000,000원×1식 = 10,000,000	10,000	
405. 자산취득비		3,000	
	자산취득비	3,000	
	○ 업무용 노트북 구입 3,000,000원×1식 = 3,000,000	3,000	
801. 예비비		55,135	
	○ 예비비 55,135,221	55,135	

기 타 안 건

기 타 안 건

1] 2015년도 연회비 미납도시

- 대 상
 - 서울시 금천구 : 회비납기 연장요청 (2016년에 4,000천원 납입 예정)
 - 서울시 동작구 : 2015년도, 2016년도 예산 미확보
- 연회비 : 2,000천원
- 근 거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관 제9조 3항

[참 고] 제9조(자격 상실)

③ 운영위원회는 협의회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납입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참 고 자 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관

제 정	: 2004. 11. 19	임시회
개 정	: 2006. 01. 18	임시회
개 정	: 2006. 02. 22	임시회
개 정	: 2006. 09. 14	총 회
개 정	: 2007. 09. 12	총 회
개 정	: 2008. 09. 29	총 회
개 정	: 2010. 02. 04	임시회
개 정	: 2010. 09. 09	총 회
개 정	: 2011. 07. 22	임시회
개 정	: 2012. 02. 22	임시회
개 정	: 2015. 04. 06	임시회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orea Healthy Cities Partnership, 이하 ‘협의회’라 하며 영문약칭으로는 “KHCP”라 한다)라 칭하며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강 도시들을 공식적으로 대표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 및 건강형평성 달성을 위하여 지방정부(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도시”라 칭한다)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 평화로운 도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추진
2. 건강도시 프로젝트 평가 사업
3. 회원 간 교류 지원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4. 회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5. 건강도시 홍보사업
6. 그 밖에 본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4조(구성 및 자격) 협의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정회원 :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제3조의 사업을 수행코자 하는 단체로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의 인증을 받은 자치단체
2. 준회원 : 정부기관, 협력대학 및 연구소, 비정부기구(NGOs), 국제기구, 민간부문/기업 등

제5조(가입절차) ①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1>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의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사무국은 가입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정한 자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준회원의 경우는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신청 기관은 제2항의 통지를 받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준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권리)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가진다.

- ① 협의회회 회원으로서의 권한과 편익을 향유할 권리
- ②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및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 ③ 정관에 따라 선출되는 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④ 협의회회 사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 ⑤ 준회원은 투표권과 의결권을 제외한 정회원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 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 ②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 ③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 ④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회원 상호간 협력의 의무

제8조(포상)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발전 또는 건강도시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자격 상실) ① 협의회 회원은 탈퇴 의사를 명시한 문서를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② 협의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승인을 거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1. 협의회를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 2.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운영위원회는 협의회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납입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회원 자격의 상실에 관하여 해당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구성 및 임기) ① 임원은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임원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의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④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임기 만료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11조(의장도시 선출) ① 의장도시는 총회 개최 6개월 전 희망도시를 공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다.

② 의장도시는 정기 총회에서 전회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2조(부의장도시 및 감사도시 선출) ① 부의장도시는 의장 도시가 지명한다.

② 감사도시는 2개 지자체로 두되, 정기총회에서 전체회원의 과반수 참석과 많은 득표 순위에 따라 2개 지자체를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회의 업무 및 회계 상황에 대한 감사
2. 총회와 운영위원회에 감사결과의 보고
3. 의장에게 감사 결과에 관한 의견 제시
4. 부정 부당한 행위의 시정 요구

제4장 총 회

제14조(구성) 총회는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하며, 협회회의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5조(회의) ① 정례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 개최지는 회원 협의에 의해 정기총회에서 결정되며, 개최지자치단체는 총회를 주관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9월중에 개최한다. 다만 국내·외 여건에 따라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최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소집의 이유와 부의 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
3.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요구가 있을 때

제16조(총회의 역할) 총회는 의장이 제출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①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계획 또는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③ 의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④ 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에 관한 사항
- ⑤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사항 및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사항
- ⑥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참석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소속기관의 해당 부서장 이상에게 표결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제18조(협의·결정사항의 효력) ①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9조(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11개 지방자치단체 이내의 정회원과 다수의 준회원을 두며, 이는 의장도시에서 지명한다.

② 의장도시와 부의장도시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역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 ① 협의회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 ② 정보의 교류와 축적에 관한 사항
- ③ 세입·세출 협의 결정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본 협의회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21조(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참석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위원은 소속기관의 부단체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2(실무협의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운영위원회의 실무자로 구성한다.

제21조3(실무협의회 기능) ①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검토
- 2.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시행 검토
- 3. 회원 상호 간 정책 공유 및 협의
-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사전검토 등

제6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22조(위원회의 설치) ① 협회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 사업 영역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회회의 발전과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사무국

제23조(사무국 설치) ① 협회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의장도시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협회회의장이 임명하며,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제8장 재 정

제24조(회계년도) 협회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재원) 협회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연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6조(회비 등)

- ① 연회비의 액수는 정기 총회에서 정한다.
- ② 회비 등은 협의회 은행 계좌로 수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회비 등 재정 관리는 의장도시의 사무국장이 맡고,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연회비는 매 회계년도 개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고지하고, 그 납부 기일은 매년 2월 말일로 한다.

제27조(세입) 협의회는 다음의 연회비 및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

- ① 정회원(연회비) : 광역자치단체 : 300만원, 기초자치단체 : 200만원
- ② 준회원(연회비) : 없음
- ③ 기타 : 수입창출활동, 보조금, 기부금, 후원금, 출연금 등

제28조(세출) 다음 사항은 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여 지출한다.

- ① 협의회 회의와 관련된 비용
- ② 기타 협의회 운영(교육, 훈련,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등)과 같은 본래 사업과 협의회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운영하거나 실행하는데 사용)에 필요한 경비
- ③ 의장도시의 활동비로 회비에서 연간 300만 원이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 ④ 의장도시에 사무보조원 1인을 채용할 수 있고, 보수 총액은 행정안전부의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예산 및 결산)

- ① 세입·세출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및 결정 한다.
- ② 의장도는 회계연도마다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해 최초 임시총회에서 보고한다.
- ③ 감사도는 의장도가 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검토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 해 최초 운영위원회 및 임시총회에서 보고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 가입 신청서

기관명		부서명	
대표자		생년월일	
담당자		연락처	Tel. Fax.
소재지			
홈페이지			
AFHC 가입여부	<input type="checkbox"/> 가입 <input type="checkbox"/> 미가입 ※ 가입년월일, 가입예정시기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납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관」 제5조 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장 (서명 또는 날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회장 귀하			
【 구비서류 】 ① 건강도시 부서 조직도/전담인력 현황 ② 추진해온 건강도시사업 소개 ③ 향후 사업추진 계획 ④ 도시 프로파일(인구수, 지역적 특성 등) ※ 5페이지 내외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위원회 연혁

1. 2006. 1. 18. 임시회, 운영위원 구성

창원시, 강원도 원주시, 부산진구, 서울 강남구, 충남 금산군, 서울 도봉구

2. 2006. 3. 14. 희망 도시(문서 창원시보건소-2741호), 운영위원회 구성

서울특별시, 서울 강남구, 서울 성동구, 서울 도봉구, 부산진구, 충남 금산군, 충남 연기군, 강원도 원주시, 경남 남해군, 경남 창원시

3. 2008. 9. 29. 정기총회, 제2대 운영위원회 구성

서울특별시, 서울시 강남구, 부산진구, 충남 금산군, 강원도 원주시, 경남 진주시, 경북 안동시, 울산 북구, 경기도 광명시, 광주 동구, 연세대학교, 고신대학교, 충남대학교

4. 2011. 2. 8. 의장도시 지명, 제3대 운영위원회 구성

원주시, 부산진구, 서울 성북구, 서울 중구, 광주 동구, 경기 광명시, 경기 시흥시, 충남 부여군, 전남 장흥군, 경북 안동시, 경남 창원시, 연세대학교, 고신대학교

5. 2013. 2. 20. 의장도시 지명, 제4대 운영위원회 구성

원주시, 부산진구, 서울 강남구, 서울 성북구, 인천 연수구, 광주 서구, 경기 시흥시, 충남 서산시, 전남 장흥군, 경북 구미시, 경남 창원시, 연세대학교, 고신대학교

6. 2015. 3. 18. 의장도시 지명, 제5대 운영위원회 구성

서울 강동구, 경기도 시흥시, 강원 원주시, 서울 강남구, 인천 연수구, 광주 서구, 대전 유성구, 충남 아산시, 전북 진안군, 경북 구미시, 경남 양산시, 성균관대학교, 경북대학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 현황

【 2015. 9월 현재 / ★표: 운영위원회 】

지역	도시명	가입연도	지역	도시명	가입연도	지역	도시명	가입연도
서울 (21)	서울특별시	2006	광주 (3)	동구	2007	전남 (4)	장흥군	2006
	★강남구	2006		★서구	2010		완도군	2009
	도봉구	2006		남구	2011		순천시	2009
	성동구	2006	★유성구	2013	광양시		2015	
	성북구	2006	울산	울산광역시	2015	경북 (8)	안동시	2007
	동작구	200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2006		★구미시	2009
	중 구	2007	경기 (11)	화성시	2007		고령군	2012
	서대문구	2008		부천시	2007		경산시	2012
	영등포구	2009		광명시	2008		포항시	2012
	송파구	2009		의왕시	2009		상주시	2012
	구로구	2009		양평군	2009		울진군	2013
	종로구	2009		★시흥시	2009		경주시	2014
	★강동구	2009		수원시	2011	경남 (7)	남해군	2006
	중랑구	2009		안성시	2013		진주시	2006
	용산구	2010		용인시	2013		창원시	2006
	관악구	2010		고양시	2015		★양산시	2010
	동대문구	2011		오산시	2015		하동군	2010
	강서구	2011	강원 (3)	★원주시	2006	통영시	2014	
	양천구	2011		양구군	2009	거창군	2014	
	금천구	2011		속초시	200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006
	강북구	2015	충북 (2)	제천시	2009		정회원 81개 도시	
부산진구	2006	충남 (7)		진천군	2009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건강도시연구센터		
부산광역시	2007		금산군	2006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수영구	2014		서산시	2007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건강증진연구센터			
대구	수성구		2015	부여군	2008	순천향대학교 건강도시 및 건강영향평가연구소		
	인천광역시		2012	천안시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당진시	2014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인천 (2)	★연수구		2011	★아산시	2015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논산시		2015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건강도시연구센터			
		무주군		2009	경남대학교 건강향노화센터			
전북 (5)			장수군	2010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증진연구팀			
			★진안군	2013	준회원 10개 기관			
			군산시	2013				
			남원시	2015				